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24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24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박용준·송용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가발구입비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 가발구입비 지원기준(안 제5조)
-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안 제6조)
-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준용(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암환자 복지 증진 책무를 구체화한 적법한 자치법규 입법으로, 함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는 암환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여 치료 의지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치료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암환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므로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시와도 시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매칭 사업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용준 의원)

의 안 번 호	4624

발의연월일: 2026. 8. 27.

발 의 자: 박용준·송용석 의원

찬 성 자: 강정수, 설재영, 김동성, 정홍근, 이원배, 신진미, 함미정, 김태민, 정인화, 최병순, 최혜연, 양유환, 김세원, 김명현, 최미자, 정능호 (16인)

1. 제안이유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발구입비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발구입비 지원기준(안 제5조)

라.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준용(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암관리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관련부서 협의 필요

다.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2026. 8. 28. ~ 9. 3. / 7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은 실제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2021. 3. 23.>

관계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 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별지 서식] [앞 쪽]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암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약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조례 제6조제3항 관련)

구비서류: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 ·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의2(해당자)
2.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의3(해당자)
3.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환자용: 별지 제7호, 가구원 · 보호자용: 별지 제7호의2)
4. 진단서(진단일자 및 진단명 명시)
5. 가발구입 영수증
6.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7.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해당자)
8. 지원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별지 제15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